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1재다885 소유권말소등기

원고(재심원고) A

피고(재심피고) 1. G

2. B

3. C

4. D

5. 한국농어촌공사

6. E
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46842 판결

판 결 선 고 2012. 6. 14.

주 문

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,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. 상고심은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,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,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. 따라서 원고(재심원고)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[원고(재심원고)가 재심소장 등에 기재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취지의 위 민사소송법 규정으로 선회한다]의 서증의 위조·변조에 관한 것과 같이 사실심에서의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될 수 있을 뿐 상고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 수 없다(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재다746 판결 등 참조).

그리고 피고(재심피고) G는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등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당사자적격도 없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양창수

주심 대법관 이상훈

대법관 김용덕